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68
----------	-------

발의연월일 : 2025. 10. 22.

발의자 : 최은석 · 안철수 · 이달희  
진종오 · 이양수 · 최보윤  
배준영 · 김승수 · 추경호  
이종배 · 이종욱 · 김기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응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